

「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11월 20일, 남진삼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12월 5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남진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 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」 사항을 반영 및 자구 정비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(안 제6조제2항 관련)
-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(안 제6조제4항 관련)
- 다른 기관의 계획에 따를 경우 해당 계획서로 연수계획을 갈음 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(안 제8조제1항 관련)
- 다른 기관의 보고서에 따를 경우 해당 보고서로 연수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(안 제9조제1항)
-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「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검토보고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안자 : 남진삼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11. 20.
- 회부일자 : 2024. 11. 25.
- 상정일자 : 2024. 12. 5.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 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」 사항을 반영 및 자구 정비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(안 제6조제2항)
-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규정 신설(안 제6조제4항)
- 타 기관의 계획, 보고서에 따를 경우 해당 계획서로 연수계획 및 연수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(안 제8조제1항, 안 제9조제1항)
-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규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심사 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지양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고, 운영사항에 대한 단서를 규정하여 원활한 연수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,
 - “의사담당” 을 “의정팀장”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,
 -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- 다른 기관의 계획 및 보고서에 따를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및 보고서로 연수 계획 및 보고서를 갈음하여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,
 - 기존 조례의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음.
- 검토결과,
 -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참고자료: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나. 조례 · 규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 및 그 운영 · 관리

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남진삼 의원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64 |
|----------|-----|

발의 연월일: 2024년 11월 20일
발의자: 남진삼 의원
찬성자: 김광성, 심현정, 이창열의원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「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폐영향 평가
개선 권고」 사항을 반영 및 자구 정비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
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(안 제6조제2항 관련)
 - 안 제6조제2항 중 “의사담당”을 “의정팀장”으로
- 나.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(안 제6조제4항 관련)
 - 위원장은 회의록을 자체 없이 평창군의회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
라 한다)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다. 다른 기관의 계획에 따를 경우 해당 계획서로 연수계획을 갈음할 수
있도록 단서 신설(안 제8조제1항 관련)
- 라. 다른 기관의 보고서에 따를 경우 해당 보고서로 연수보고서를 갈음할 수
있도록 단서 신설(안 제9조제1항)
- 마.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입법예고 : 없음

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원(이하“의원””을 “의원(이하 “의원””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평창군의회의장(이하“의장””을 “평창군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”으로 한다.

제4조제5항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의사담당”을 “의정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자체 없이 평창군의회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7조 중 “안에서 ·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· ”를 “안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전”을 “전(긴급을 요할 경우 7일전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른 기관 등의 연수계획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보고서로 갈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<u>의원</u> 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공무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 <u>의원</u> (이하 “의원”----- ----- -----. |
|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연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 략) 5. 기타 <u>평창군의회의장</u> 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여행 하는 경우 | 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 <u>평창군의회의장</u> (이하 “의장”----- ----- |
| 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~ ④ (생 략)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 ⑥ · ⑦ (생 략) | 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. <u>다만</u> ----- -----. ⑥ · ⑦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회의) ① (생 략)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의사담당이</u> 된다.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 | 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의정팀장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자체 없이 |

| | |
|--|--|
| <p>제7조(수당 및 여비) 민간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<u>· 평창군 각 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</u> · 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연수계획서 제출) ① 공무국 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연수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u>단, 긴급을 요할 경우 7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연수보고서 제출) ① 공무국 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연수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| <p><u>평창군의회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에 게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7조(수당 및 여비) ----- ----- ----- <u>안에서 「평창군 각 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연수계획서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 <u>전(긴급을 요할 경우 7일전)</u>----- ----- <u>. 다만, 다른 기관 등의 연수계획에 따를 경우에</u>는 해당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연수보고서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--|--|

【관계법령】

< 지방자치법 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의회 남진삼의원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500 |